

국회의원(신동욱) 징계안

의안 번호	18620
----------	-------

요구연월일 : 2026. 4. 24.

요 구 자 : 이주희 · 김 윤 · 김승원
이건태 · 박선원 · 정태호
김동아 · 김 현 · 손 솔
전용기 · 최혁진 · 이용우
윤종균 · 김준혁 · 황정아
이훈기 · 이성윤 · 서미화
최민희 · 권향엽 · 이강일
박지원 · 송재봉 · 이광희
김문수 의원(25인)

주 문

국회의원(신동욱)을 「국회법」 제155조제8호, 제9호 및 제16호에 따라 징계한다.

징계사유

가. 국회의 회의는 국민을 대표하는 공적 의사결정과 국정통제의 장이며, 특히 국정조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행사하는 중대한 통제권한임. 그럼에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동욱은 위원장의 질서유지 조치를 거부하고, 동료 의원의 질의를 가로막고, 퇴장명령 이

후에도 회의장 주변에서 소란을 계속함으로써 국정조사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였음.

나. 신동욱 의원은 2026년 4월 16일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8차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의 질서유지 지시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면서 회의 진행을 현저히 방해하였음. 위원장이 “11시 32분에” 발언정지 조치를 하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앉으시든지” “나가세요”라고 여러 차례 지시하였음에도, 신동욱 의원은 위원장석 옆에서 계속하여 발언권을 요구하고 항의하며 소란을 이어 갔음. 이에 위원장이 명시적으로 “신동욱 위원 퇴장”이라고 조치함. 이는 「국회법」 제145조에 따른 회의질서 유지의무에 따른 위원장의 조치임.

다. 신동욱 의원은 위원장이 퇴장 조치를 한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 오히려 “뭘 퇴장을 해, 퇴장을 하기는. 발언권 주세요”라며 퇴장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였고, 위원장석 부근에서 계속 항의하여 회의 진행을 중단·지연시켰음. 이는 위원장의 적법한 질서유지권 행사를 무력화한 행위임. 이는 「국회법」 제145조에 따른 회의질서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임.

라. 신동욱 의원의 행위는 동료 의원의 질의권도 직접적으로 침해하였

음. 당시 이주희 의원이 ‘악의 평범성’ 개념에 대해 질의하던 중 신동욱 의원은 일방적으로 발언의 취지를 왜곡하며 고성과 함께 끼어들며 “대장동 일당이 꺾박받은 유대인입니까?”라고 발언했음. 이주희 의원은 유대인의 학살을 비유한 것이 아니고, 한나 아렌트가 제기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철학적 개념이, 현대 우리 사회에 비판적 사고와 성찰 없이 그저 조직에 순응한채 성실하게만 지낼 때 그것이 초래할 사태에 대해 경각심을 준다는 지적에도 발언취지를 완전히 왜곡하였음. 이어 신동욱 의원은 “비유를 들 걸 좀 드세요. 발언권이 없어서 이렇게 막갑니다. 점잖지 않다면서요”라고 발언하며 스스로 위법행위를 인정했음. 신동욱 의원의 계속되는 고성 방해로 질의가 들리지 않자, 이주희 의원은 질의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위원장에게 “지금 심각하게 제 질의권이 침해됐습니다. 퇴장시켜 주십시오”라고 항의하였음. 그럼에도 신동욱 의원은 즉각 멈추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이어갔음. 이로써 이주희 의원의 질의는 현저히 방해를 받았음. 이는 국정조사에서 보장되어야 할 위원의 적법한 질문권과 위원회의 정상적인 조사기능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여 「국회법」 제147조 발언방해 금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

마. 신동욱 의원은 회의 과정에서 위원장 및 동료 위원을 향한 모욕적 표현도 사용하였음. 위원장을 향하여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라고

반복적으로 발언하였고, 특정 위원을 겨냥하여 “부정 선수도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선수가 부정이라니까요. 부정 선수가 들어 왔는데 어떻게 경기를 합니까?”라고 말하였음.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절차상 항의의 범위를 넘는 인격적 비난과 모욕에 해당함. 이는 「국회법」 제146조에 따른 모욕 등 발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임.

바. 신동욱 의원의 행위는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발언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발언정지 조치와 퇴장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계속된 반복적·고의적 불응이었음. 신동욱 의원은 “저는 이것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할 겁니다”라고 말하며 위원장의 조치에 따를 의사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음. 이는 자신의 행위가 회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불응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함. 이 또한 「국회법」 제145조에 따른 회의질서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임.

사. 위와 같이 국회의원 신동욱은 「국회법」 제145조에 따른 회의질서 유지의무, 같은 법 제146조에 따른 모욕 등 발언 금지의무, 같은 법 제147조 발언방해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고, 나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와 적법절차 준수 의무에도 반하므로, 「국회법」 제155조제8호, 제9호 및 제1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엄중

한 징계가 불가피함.